보건복지부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5년 **7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1551-1290에서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보조금의
부정수급 신고 방법 및 처리 진행상황 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부정수급 환수액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 환수 결정액 1억 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1억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4~20% 추가 지급

신고자 비밀 보장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

* 실명 또는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

부정수급 신고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간편하게 신고,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서면신고도 가능

우편 (300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팩스 044-202-3906

* 신고를 하실 때는 피신고자,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 발생 일시(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부정수급 추정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부정수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상담은 국번없이 1551-1290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보건복지부

2025.7.4. 제작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bokjiro.go.kr)에
신고하세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2025. 7. 9.(수) ~ 8. 29. (금)

보건복지부

2025.7.4. 제작

사회보장급여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

2025.7.4. 제작

부정수급이란 어떤 행위 인가요?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2025.7.4. 제작

부정수급이 자주 일어나는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국민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권자 자격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본인과 가족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

장애인연금·수당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본인 및 가족의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여 장애인
연금/수당 부당 수령

사회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담합하여 거짓으로 비용을
청구

기초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 관계임에도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각각 연금 수령

보건복지부

2025.7.4. 제작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부정수급 신고기간 및 방법

☑ 신고기간

2025년 7월 9일 ~ 8월 29일

☑ 신고방법

01. 복지로(www.bokjiro.go.kr) → [부정수급 신고하기] → 신고내용 입력

02.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03. 팩스(044-202-3906)

☎ 1551-1290

부정수급 신고방법 및 절차 안내, 부정수급 관련
기타 민원 및 타부처 연관사업 안내 등 전담인력이 친절상담

보건복지부

2025.7.4. 제작

부정수급 신고하면 국가가 직접 포상금을 드립니다!

지급대상

부정수급을 신고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고 건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확인하고 환수를 명한 건**

지급기준

환수결정액 **1억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1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4~20% 추가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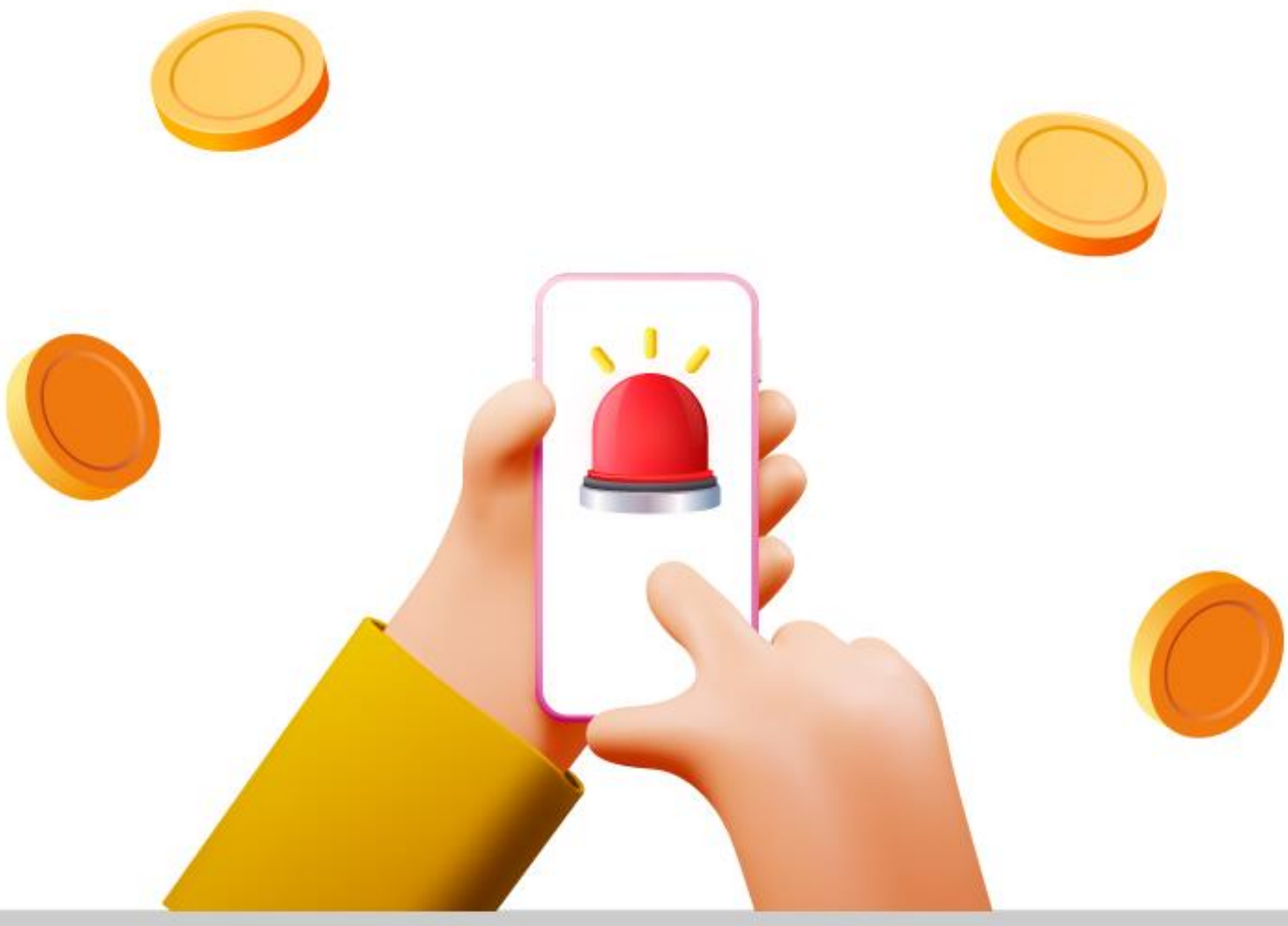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2025.7.4. 제작

부정수급 신고 시 이것까지 알아두세요!

☑ 신고요령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일시(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부정수급 추정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 기재

☑ 신고자 비밀 보장

실명 뿐 아니라 익명으로 신고 가능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접수단계부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

보건복지부

2025.7.4. 제작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고상담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1551-1290)
신고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 우편 / 팩스